

『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윤 종 욱 외 4,357명

2. 청원이유

-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경차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원함.

3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, 이후부터 70% 요금 감면(안 제5조)
-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10%이상 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(안 제6조)
-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신설·확대 비용 지원 등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(안)

5. 검토의견

- 본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청원 조례 제정(안) 및 일부개정조례(안) 참조

경차 우대 조례(안)	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(안)	반영여부
•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, 이후부터 70% 요금 감면 (안 제5조)	•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, 이후부터 50% 요금 감면 (안 제4조)	여
•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면수의 10% 이상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 (안 제6조)	•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면수의 10%이상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 (안 제8조)	여
•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신설·확대 비용 지원 등 (안 제6조)		부
• 경차를 신규등록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 (안 제4조)		부